

【 4 】 양주군리장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3. 5. 7.

제출자 : 양주군수

제안이유

- '93행정구역 조정에 의한 행정리 분리로 인한 정원의 조정
-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회천읍 덕정2리를 분할하여 덕정2리와 덕정7리로
- 회천읍 덕계1리를 분할하여 덕계1리와 덕계8리로
- 회천읍 덕계2리를 분할하여 덕계2리와 덕계9리로
- 회천읍 덕계3리를 분할하여 덕계3리, 덕계10리, 덕계11리로
- 회천읍 덕계5리를 분할하여 덕계5리와 덕계12리로
- 회천읍 덕계6리를 분할하여 덕계6리와 덕계13리로
- 회천읍 회정1리를 분할하여 회정1리와 회정5리로
- 회천읍 회정3리를 분할하여 회정3리와 회정6리로
- 주내면 산북2리를 분할하여 산북2리와 산북3리로
- 백석면 오산2리를 분할하여 오산2리와 오산4리로 분할함.
따라서 현재 122개의 행정리가 11개리 분리로 추가됨으로서 133개리로 조정.

양주군 조례 제 호

양주군리장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(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)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중 정원란의 회천읍 덕정리 “6”을 “7”로 하고, 덕계리 “7”을 “13”으로 하며, 회정리 “4”를 “6”으로 하고, 주내면 산북리 “2”를 “3”으로 하며, 백석면 오산리 “3”을 “4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 5 】 양주군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- 제출년월일 : 1993. 5. 7.
- 제출자 : 양주군수

제안이유

- ‘93행정구역 조정에 의한 행정리 분리에 따른 반의 신설 및 과다한 반구역의 조정
- 양주군 반설치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현행과 일치시켜 읍.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
-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에 속한 하부조직에 관한 관할 구역을 명백히 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현행 총597개반을 639개반으로 조정 : 42개반 증설
 - 行政리 분리로 인한 신규반 설치 : 11개리 54개반 신설 (증)
 - 과대반 조정에 따른 반 증설 : 10개리 11개반 증설 (증)
 - 신설리의 반편입으로 인한 기존 행정리의 반조정 : 10개리 23개반 조정 (감)